#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0

발의연월일: 2020. 6. 5.

발 의 자 : 임오경 · 고용진 · 이낙연

윤관석 · 김영주 · 양향자

이수진 · 정청래 · 양기대

서삼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전체 수업시간 중에서 체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주요 선진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이러한 체육활동 경시 풍조 만연으로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척추측만증과비만으로 인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체육관과 같은 학교 체육시설에서 폭력, 성폭력 등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 화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 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제4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 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 치·관리하여야 한다.
-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
	<u>야 한다.</u>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
	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
	여야 한다.
<u> &lt;신 설&gt;</u>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
	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
	보 보호법」에 따른다.
③ (생 략)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